

『인천광역시와 이탈리아 베네토주』 간의 자매결연안

『인천광역시와 이탈리아 베네토주』 간의 자매결연안

의안 번호	1076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국제도시간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 그리고 공동발전 도모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유럽 국가 도시인 이탈리아 베네토(Veneto)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추진배경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베네토 전시관 설치·운영을 계기로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의 추진
- 자매도시가 전무한 유럽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
- 베니스 마르코폴로국제공항 및 항만보유로 양 지역간 교류 용이

□ 추진경위

- 2009. 9.30 : 양 지역간 자매교류 진행을 위한 대표단 초청 서한문 발송
- 2009.10.19 : 베네토주 국제교류국장 방인시 자매결연 협정 문안 제시
- 2009.11. 4 : 베네토주지사로부터 자매결연 제안 및 협정서(안) 접수
- 2009.11.16 : 자매결연 협정서(안) 동의 등 시장님 서한문 발송
- 2010. 3.15 : 이탈리아 중앙정부 및 베네토주 최종 승인
- 2010. 4. 1 : 신임 베네토주지사 당선 축하인사 및 자매결연 관련 서한문 발송

□ 검토분야 및 결과

Ⅹ 검토분야

-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기타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Ⅺ 검토결과

- 베네토주는 과거 베네치아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잘 보존된 역사와 예술 등으로 인하여 관광산업과 호텔산업이 발달하여 매년 14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또한, 4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첨단혁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수출과 국제교역 많은 지역임
- 베네토주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계기로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무역, 경제, 문화, 관광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 우호와 협력 증진 필요
- 특히, 한국전 참전 국가 도시 중 하나로 2010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본 자매결연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양 지역간 혈맹관계의 계승 발전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국제도시간 우호 및 경제협력 등 다각적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도모
 - 시장개척단 및 우수바이어 상호초청, 외자유치단 파견
 - 우수기능 상호 벤치마킹, 전문인 또는 근로자 노동력의 교환협조

- 전통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교류
- 공무원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 등

-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행정의 국제화, 선진화 도모
-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 및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의결 : 2010. 6월중
- 자매결연 체결 : 2010. 6월중

□ 별첨 : 일반현황 및 관련규정

- 도시 개황 및 위치도 (별첨1)
- 국제자매우호도시현황 (별첨2)
-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별첨3)

《별첨 1》

베네토(Veneto)주 개황

지리적 위치

- 이탈리아 동북쪽 알프스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20개 주중 하나

주 지 사 : 루카 자이아(Luca Zaia)

면 적 : 18,391km²

인 구 : 491만명(2009기준)

행정조직 : 7개시 및 581개 행정단위

- 주요도시 : 베로나, 파도바, 비첸차, 베네치아, 트레비소, 로비고, 벨루노

주 도 : 베네치아(베니스)

경제 현황

- 이탈리아 지역 중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지역
- 1인당국민소득 : 27,000유로
- 실업률은 3.3% (국가 평균 6.1%), 고용률 65% 임
- 이탈리아에서 수출 및 국제교역이 2번째임
- 이탈리아 최대의 관광지이며 14백만명의 관광객이 61백만일 숙박함

주요 산업

- 수출 규모 : 약 475억 유로 (지역 생산품의 36.4% 수출)
- 4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반을 이룸
- 농업은 고급지역 특산물(와인, 치즈, 햄)을 생산하며,
제조업은 섬유, 신발, 기계, 가구 및 식품 생산 등에 주로 집중

정치 현황

- 사법권을 제외한 자체 규약과 정부조직, 실행조직을 갖춘 자체단체
- President라 불리는 주지사가 행정을 책임지고 지역의회가 법제정 담당

□ 베네토주 위치도



《별첨 2》

국제자매우호도시 현황

자매도시(18)		우호도시(11)		비고
체결일시	도 시 명	체결일시	도 시 명	
1961.12.18	미국 버뱅크	1994. 4. 2	중국 대련	
1983. 8.15	미국 필라델피아	1994. 5.11	베네주엘라 차카오	
1986.10. 7	미국 앵커리지	1995. 9.23	중국 단둥	
1988.12.20	일본 기타큐슈	1995. 9.27	중국 청도	
1993.12. 7	중국 천진	2004. 2.16	중국 산둥성	
1997. 7.25	베트남 하이퐁	2004. 3.29	브라질 히오그란지도술주	
2000. 3.16	파나마 파나마시티	2007. 3.29	중국 연대	
2000. 5.14	이스라엘 텔아비브	2008. 5. 9	필리핀 알바이주	
2000. 5.1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2009. 9.14	중국 대만 타오위엔현	
2003.10.15	미국 호놀룰루	2009.11.10	중국 하얼빈	
2007. 6. 1	중국 중경	2009.12.23	일본 요코하마	
2007.10.15	인도 콜카타			
2007.10.15	멕시코 메리다			
2008.10. 7	필리핀 마닐라			
2009. 3.27	캄보디아 프놈펜			
2009. 9.14	인도네시아 반튼주			
2009. 9.14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2010. 4. 6	일본 고베시			

《별첨 3》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정 1995. 4. 12 조례 제2917호]
[개정 2000. 7. 22 조례 제345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매결연의 체결) ①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0-07-22>

② 자매결연 상대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해 자매결연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5조 (자매결연 체결의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07-22>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상호 교류추진 등과 관련하여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7-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2 조례 제3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